

<p>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부칙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</p> <p>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,36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18명</li> <li>2. 본청 · 지역교육청 ·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 정원 : 7,351명</li> </ol> <p>제 3 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) 교육위원회 의사국 · 본청(직속기관 포함) ·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부칙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</p>	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의사국) ①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(이하 “교육위원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둔다. ②의사국에 의사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. ③의사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 ④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</p> <p>제 3 조(하부조직) 의사국에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을 두며, 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 <p>제 4 조(직원의 정원)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 5 조(사무분장) ①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문서 · 보안 · 관인의 관리 3. 소관예산의 편성 ·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. 물품수급관리 5. 의전 · 행사 · 홍보에 관한 사항 6. 경비 ·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 7.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 8. 기타 의사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의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본회의 소집 ·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</p>
--	---